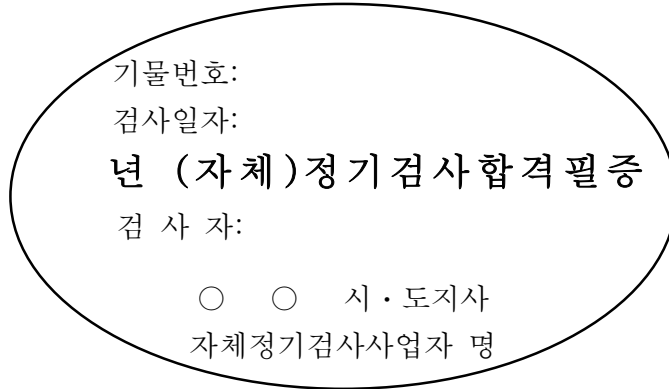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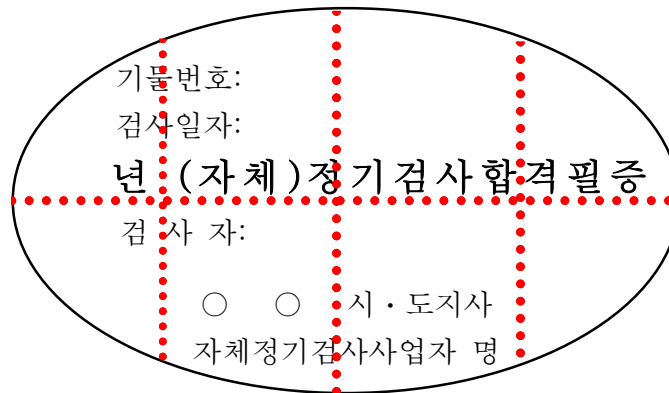
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(제32조 관련)

1. 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

2. 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야 한다.

3. 검사증인은 다음과 같이 미세한 구멍을 뚫어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


4. 검사증인의 제거방법

검사증인을 삭제하는 등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